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